

-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5. 8. 30 —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1995. 10. 10

다. 상 정 일 자 : 제4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5. 10. 1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강명종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합		계	66, 423, 062	81, 868, 333	76, 760, 826	5, 107, 507
일		반 회 계	60, 120, 406	73, 960, 353	69, 981, 015	3, 979, 338
과목	지	방 세	15, 473, 000	16, 659, 947	15, 562, 478	1, 097, 469
	세	외 수 입	14, 792, 952	27, 673, 965	24, 792, 096	2, 881, 869
	조	정 교 부 금	19, 567, 000	19, 566, 907	19, 566, 907	0
	보	조 금	10, 017, 454	9, 929, 534	9, 929, 534	0
	지	방 채	270, 000	130, 000	130, 000	0
특		별 회 계	6, 302, 656	7, 907, 980	6, 779, 811	1, 128, 169
과목	영	세 민 생 활 안 정 기 금	250, 205	354, 131	341, 867	12, 264
	의	료 보 호 기 금	2, 506, 855	2, 583, 001	2, 510, 080	72, 921
	새	마 울 사 업 소 득	129, 118	128, 717	123, 602	5, 115
	주	차 장	891, 693	2, 266, 181	1, 228, 312	1, 037, 869
	주	거 환 경 개 선 사 업	824, 785	875, 950	875, 950	0
	장	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	1, 700, 000	1, 700, 000	1, 700, 000	0

○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분	예산성립 후증감액	예산현액	지 출 액	익년도 이월액	불 용 액
합 계		66,423,062	9,234,923	75,657,985	56,270,265	13,571,597	5,816,123
일 반 회 계		60,120,406	9,234,923	69,355,329	51,458,783	12,879,681	5,016,865
과 목	의 회 비	667,829	0	667,829	602,937	0	64,892
	일 반 행 정 비	19,335,404	988,842	20,324,246	18,336,100	1,158,496	829,650
	사 회 복 지 비	13,695,119	376,550	14,071,669	13,093,588	403,249	574,832
	산 업 경 제 비	944,707	67,595	1,012,302	916,405	0	95,897
	지 역 개 발 비	22,636,009	7,576,949	30,212,958	17,085,735	10,200,908	2,926,315
	문화 및 체육비	1,770,335	259,830	2,030,165	854,987	1,117,028	58,150
	민 방 위 비	126,267	0	126,267	101,036	0	25,231
	지원 및 기타경비	944,736	△ 34,843	909,893	467,995	0	441,898
특 별 회 계		6,302,656	0	6,302,656	4,811,482	691,916	799,258
과 목	영세민생활안정기금	250,205	0	250,205	209,000	0	41,205
	의 료 보 호 기 금	2,506,855	0	2,506,855	2,499,134	0	7,721
	새마을 사업 소득	129,118	0	129,118	50,000	0	79,118
	주 차 장	891,693	0	891,693	269,608	0	622,085
	주거 환경 개선사업	824,785	0	824,785	790,941	24,000	9,844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 사업	1,700,000	0	1,700,000	992,799	667,916	39,285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세입분야

'94년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93년도 보다 17% 증가된 81,868백만원으로서 이중 93.8%인 76,761백만원이 징수되고 6.2%인 5,107백만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부분 3,979백만원과 특별회계 부분에서 1,128백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각각 징수결정액의 6.5%, 10.4%로서 93년도보다 미수납액 비율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타부문은 93년도보다 호조를 보였으나 주차장 특별회계 체납액이 '93년도 479백만원에서 1,038백만원으로 2배이상 증가하는 등

'94년도 세입부문 총체납액이 '93년도보다 14억여원이나 증가되므로써 세입규모 증대에 따라 비례적으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원조달이 구정 수행의 제1의 기반이 되고있는 점을 감안,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체납금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서는 체납액에 대한 관리 즉, 관련장부를 비치하여 미수납 사유, 변동사항 등의 파악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대장정리및 관리가 일부 부실하다는 지적이 '93년도 결산검사시에도 있었음에도 '94년도에 동일한 내용이 지적된것은 체납액해소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다고 사료되는 바, 차제에 체납의 대중을 이루는 과년도 체납액 일소를 위한 방안 강구를 포함하여 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기간내 정리가 되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세출분야

'94년도 예산현액 75,658백만원중 지출액과 익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불용액이 5,816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절반이 넘는 2,926백만원이 지역개발 부문 예산으로서 이는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미흡한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건과 같은 내용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음은 예산편성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익년도 이월액이 13,572백만원에 이르는 것도 사업추진 시기의 지연 및 사전조사 등의 미비에 기인되는 것으로써 여기에 대하여도 예산편성전에 미리 충분한 사업 시행시기의 조정과 장애요인등에 대한 해결대책을 강구하므로써 일단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의견

'94년도 세입세출결산은 대체적으로 수지균형이 맞는 예산편성과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 하므로써 전체적으로는 과년도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영이었다고 생각됨.

4. 질의답변 요지 (강명종 재무과장, 이태경 징수과장)

○ 질 의

-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등이 과다 발생하였는데 구체적사유가 무엇이며, 이월금이 대부분 예산절감으로 나타나 있는데 실제 절감인지 아니면 편성부터 잘못되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인지?
- 내무부에서 예산절감 목표액이 지금도 하달되고 있는지?

⇒ 답 변

- 각종 공사비중에서 이월금이 많은 것은 시비, 국비중에 보조금지원이 연말까지 내시되는 경우와 아울러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이월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관서당 경비에서 5%를 절감하고 전체 사업비에서 절감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으며, 각 부서별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시행한 것임.

○ 질 의

- 과오납 반환액이 5억8천만원중 특히 세외수입 부분이 5억4천만원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이중납부, 과세자료 착오계산등에 대한 개선을 위해 직원 법규연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답 변

- 삼성개발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지방비 50%액) 부과에 대한 소송 패소결과 환부액(3억 8천8백)이며 또한 도로굴착 복구비 등 부담금에 있어 공사 변경에 따른 정산차액분임
- 종토세 등은 전국 합산과세로 인하여 어느 한지역에서 수정내역이 발생되면 이에 따른 경정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며 이중납부, 착오산출등은 향후 교육을 철저히하여 최소화 하겠음.

○ 질 의

미수납액중 결손처리한 1,900만원의 내역은?

⇒ 답 변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 89년도분에 대해 여러가지 징수불능한 사유가 명확한것에 한하여 처분 한 것임

○ 질 의

미수납액 51억원에 대해 징수율 제고 방안은 무엇이며,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은 50% 징수율밖에 안되는 사유는?

⇒ 답 변

주소 추적, 재산조회, 압류방법 등을 정리한 체납자 관리카드화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질 의

체납자 카드화등 장부관리 보다는 전산화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답 변

현재 민원발급 열람용으로 단순입력시켜 사용하고 있으며, 시 관련부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연구중에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볼때 전산화가 바람직하다고 봄.

○ 질 의

사회복지비 집행잔액에 대한 구체적 사유는?

⇒ 답 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대상 분야별 및 인원 등 어떤 기준에 의거 집행함으로서 이에 따른 정산차액분임

○ 질 의

불용액 58억중 지역개발비 비중이 많은 사유는?

⇒ 답 변

편입 토지 보상금 정산액 등 대부분 시설공사와 관련된 사항이 사업비 규모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질 의

전용액이 14억원이나 발생되어 향후 규모가 큰 사업비등에 있어서 규제와 통제등으로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될것으로 보는데 견해는?

⇒ 답 변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을 지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